구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제3호의 10 내지 11

○ ○ 법 원

구 속 영 장

영장 번호
사건 번호 67 형 100
사건명
피의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.
피의자
생년월일
직업
주거
인치 구금할 장소
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구속한다.
이 영장은 검찰청 검사 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.
이 영장은 196 년 월 일 까지 유효하다.
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.
196 . . .

판사

집행 일시 196 년 월 일 시 분
집행 장소
인치 일시 196 년 월 일 시 분
인치 장소

위와 같이 처리하였다.

196 .
경찰서
사법 경찰관(리)

○ ○ 법 원

구 속 영 장

영장 번호
사건 번호 67 형 100
사건명
피의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.
피의자
생년월일
직업
주거
긴급 구속
일시 196 년 월 일 시 분
긴급 구속
장소
긴급 구속자
의 직, 성명
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구속한다.

이 영장은 검찰청 검사 의 형사소송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발부한다.
196 . . .

판사

양식 비교